



■ 한국가금학회 이사회

한국가금학회(회장 오 봉국)는 2월15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40여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주요사업계획과 수지에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금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연 2회의 학회지 발간과 1회의 학술발표회 및 2박3일간 「한국양계산업의 생산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7월10일경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또 8월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제17차 세계가금학회 및 박람회에 약 30여명의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금학회는 한국가금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유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받을 계획이다.

이사회후에는 각 분과별로 오후에도 계속 회의를 속개하였다.

■ FAO 한국협회 정기총회

- 이 회일회장 유임 -

FAO 한국협회(회장 이 회일)는 2월 14일 교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83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84년도 사업계획과 총규모 118,268천원의 수지에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84년도 FAO 주요사업으로는 동남아지역에 농업시찰단을 파견하고 제17차 FAO 아태지역 총회(파키스탄)에 대표를 참석시키고 연구홍보사업 및 도서발간사업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임원개선에서는 이 회일(李煥逸) 회장을 유임시키고 (현 한국제분공업협회장, 전농수산부장관) 부회장에는 KREI의 김 영진부원장, 축협중앙회 이 중민 부회장, 전 석홍내무부 지방행정차관보, 명의식 농수산부기획관리실장, 신정수 농협중앙회부회장, 최 익성 수협중앙회부회장, 배 구성 농지개발조합연합회장을 선임했으며, 이사에는 황 영구 종축개발협회장, 전 응진 사료협회부회장, 이 신희 축협중앙회조사부장, 강 성원 서울우유조합장, 김 인한종묘협회장(전 농진청장) 등 22명을 선임하였다.

■ 축협, 84년도 정기총회

축협중앙회(회장 이 득룡)는 2월 22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박 중문 농수산부장관, 김 식 국회농수산위원장, 축협조합장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83년도 총사업 실적 보고에 이어 정부의 축산부문 투자를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3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을 보면,

● 급증하는 축산물의 자급도 제고와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산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융자를 대폭 확대해 줄 것.

● 축산물 유통처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도시에 축산물 공판장을 설치, 축협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

● 소규모 부업양돈 농가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규모 기업 양돈에 대해 적절한 규제조치를 취해 줄 것.

등이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양축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마련한 「새양축가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또 박 중문 농수산부장관은 치사를 통해 「부업축산물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금년중에 축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필수품값 매일점검

경제기획원(EPB) 물가당국은 기본생활품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급과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는 특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대상품목은 농축산물 23개, 공산품 48개, 대중서비스품목 3개 등 74개 품목이다. 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된 금년도 물가관리방안에 따르면 이들 74개 품목은 관련부처에 책임담당관제를 운영, 시장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기로 하였다.

EPB 물가당국자는 본지 기자와의 대담에서 74개 품목중 계란 닭고기는 특히 중점관리 품목으로 업계의 적극적인 가격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축산물로는 이외에 돼지고기, 쇠고기도 포함되어 있다.

아물든 구조적으로 년중 가격진폭이 큰 양계산물인지라 앞으로 정부에서는 가격안정을 위한 구조적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민원 우편대상서류

농수산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편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직접 농수산부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

대상서류는 △ 사료수입추천 △ 주요농작물 수입추천 △ 농약제조(수입)품목 등록신청 △ 동물약품 등 수출입품목허가 △ 교육수로확인서 △ 수의사면허증 재교부신청 △ 검정증등본 재교부신청 △ 의뢰검사신청 등이다.

■ 유가공협회, 우유홍보 주력키로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윤 패병)는 지난달 가진 정기총회에서 식생활개선을 위해 우유의 공동홍보사업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울 협회운영방침을 정했다.

또 이날 총회에서는 84년 예산을 작년보다 13%가 많은 2억 2천 6백만원으로 확정짓는 한편 17개 회원사에 대한 기술 교육을 강화, 연내 유가공 국제심포지엄을 비롯한 가공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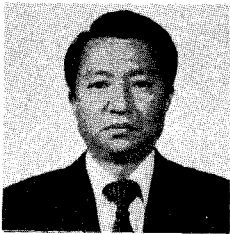
■ 국립종축원 인사

국립종축장에서 「國立種蓄院」으로 개칭, 지난 2월 7일 현판식을 거행한 국립종축원(원장 지 설하)은 2월 18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을 했다.

- 김 경남(종축관리과장)
- 조 윤연(대가축과장)
- 강 만석(중소가축과장)
- 정 순규(사료생산과장)
- 박 태진(대전지원장)
- 박 상문(사천지원장)
- 이 상범(대관령지원장)
- 오 대균(남원지원장)

■ **축협중앙회 인사**

- 이 사 : 천 병득
- 별 급 : 유 남 렬
- 연 수 원 장 : 오 성 환 (서 산 목 장 장)
- 구 매 부 차 장 : 신 영 섭 (전 연 수 원 장)



(천 병득 이사)

● **농수산부고시제84-2호**

사료관리법 제6조제4호 및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소맥가공부산물판매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1984년 1월 6일

농수산부장관
수입소맥가공부산물판매요령

- 제1조 (목적)
- 제2조 (부산물의 범위)
- 제3조 (부산물 수급계획)
- 제4조 (부산물의 품의 및 규격) ① 판매하는 부산물은 사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생산업자는 부산물의 포장외부에 상호, 생산업자, 중량을 표시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 제5조 (부산물판매) ① 생산업자는 부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직접 판매하여야 한다.
 1. 축산 및 사료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국·공립기관
 2. 배합사료 제조업자
 3. 국내사료 자원개발이용 원료(어즙흡착사료, 발효사료, 벧짚가공사료)
 4. 보조사료 제조업자
 5. 마뿔 등 동물을 사육하는 국·공립기관

6 한국마사회 및 대한승마협회

7 동물약품제조업자

8 식품, 의약품, 주정 등 공업용원료

9 농수산장관이 지정하는 용도

② 생산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생산된 부산물의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부산물 판매가격) ① 생산자는 부산물의 가격을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생산자는 판매가격 결정시 생산자간에 가격 단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매점매석금지)

제8조 (재판매행위 금지) 실수요자는 구매한 부산물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다.

제9조 (생산 및 판매대장 비치)

제10조 (업무감독)

제11조 (보고사항)

제12조 (벌칙)

● **건설부공고제1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 및 취지를 법령안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84년 2월 20일

건설부장관

1. 법령명 :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취지
 - 가. 양성화 대상범위 확대(안 제2조의 2)
 - 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있는 특정건축물에 대하여도 동 사업시행상 철거대상이 아니거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양성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다음과 같은 도시계획 시설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가 1984년 8월 31일까지 착공계획을 수립·공고하는 도시계획시설 이의에는 양성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기관·단체소식

* 제외대상시설 : 하천·저수지·녹지·방풍설비·방조설비·방화설비·유수지·사방설비·운하

나. 신고기간 연장(안 제 4 조)

○ 특정건축물의 신고기간을 “84년 3월 31일까지”에서 “8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다.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 5 조)

○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고서 제출하는 설계도서를 배치도·평면도 만으로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무허가 건축물은 시장·군수가 작성하는 현장조사서로서 신고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라. 심의기준 완화(안 제 7 조)

○ 폭 4미터 이상의 소방도로가 확보되어야 양성화가 가능하던 것을 폭 3미터의 도로에서도 양성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에서 60미터 거리 이내에 있고 소방수들의 출입이 용이한 2미

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양성화가 가능토록 하려는 것임.

마. 과태료 인하대상 구체화(안 제10조)

○ 과태료의 기준을 종전의 1/3로 인하는 대상용도를 구체화하려는 것임.

- 마을공동구관장·공공도서관·유치원·유아원·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 등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생산공장

바. 용도별 가중치 인하(안 별표1)

(예)

용도	현행	개정안
○ 관람장·집회장	0.9	0.8
○ 공장·차고	0.7	0.6
○ 대중음식점·다방	0.95	0.5
○ 주택·도서관	0.8	0.4
○ 학교	0.8	0.1
○ 교아원·양노원	0.7	0.1
○ 축사·잠실	0.6	0.1

미국 및 구라파 양계시찰단 모집

금년 8월 8일~12일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제17회 세계가금학회 및 박람회 참가를 원하는 회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코스별로 시찰단을 모집한다.

일 정

(A코스)

미국내 양계산업시찰(채란, 육계, 도계장, 사료공장, 유통분야)을 10일간 시찰. 안내는 USFGC에서 담당하며 미국 시찰 후 핀란드 헬싱키대회에 참석 및 유럽 시찰(약 10일)을 할 수 있다.

(B코스)

헬싱키대회 참석 후 유럽 양계산업 및 관련분야 3주간 시찰, 안내는 세계가금학회에서 담당.

신청

3월말까지 대한양계협회 편집부(752-6917)로 하면된다. 모든 경비는 실비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여비 개산 및 더욱 자세한 사항은 778-8103~4(양계협회)로 문의하면 된다.